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추미애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대상을 확대하고,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법원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23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과 적합성 여부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집행 및 보석조건 이행 상황 등에 대한 통지의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 제명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을 변경함.

나. 용어의 정비(안 제16조 제1항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용어 중 “가해제”가 “임시해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다. 가석방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안 제19조 신설)

- 1) 교도소의 장 등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가 선정되면 지체 없이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를 위한 자료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함.
- 2) 심사위원회는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3)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는 범죄경력, 범죄내용 및 직업, 경제력, 생활환경 등 개별적 특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4) 심사위원회는 교도소장 등이 송부한 자료를 받아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를 하거나, 보호관찰소의 장과 협의하여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5) 교도소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를 위한 수형자 면담 등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요청

한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함.

라. 보석 전자장치 부착 집행 절차 및 방법(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
까지 신설)

- 1)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를 위하여 수용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2) 법원은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함. 이 경우 긴급한 때에는 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송부하고 사후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함.
- 3) 전자장치 부착을 보석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보석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4) 보호관찰관은 보석 피고인에 대한 결정문 등본을 확인한 후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고, 전자장치 부착 전 보석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효용유지에 관한 사항과 보석조건 위반 시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알려주어야 하며, 부착장치는 보석 피고인의 발목 또는 손목에 부착하되 발목 또는 손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신체 부위에 부착할 수 있음.

마. 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등(안 제23조의6부터 제23조의8까지 신설)

- 1)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석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법원에 송부하여야 함.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재판을 위하여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과 협의하여 이행상황을 송부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음.
- 2)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석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법원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하고 사후에 인편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함.
- 3) 법원은 보석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하고, 사후에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함.

바. 준용규정(안 제23조의9 신설)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하여는 제2조(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 제3조(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제10조(전자장치의 일시 분리), 제14조의6(수신자료 관련 비밀누설 금지 등), 및 제15조(수신자료의 폐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부착자”는 “보석 피고인”으로 본다.

사.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추가(안 제29조제1항제6호의2 및 제2항 신

설)

- 1) 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의 장, 수용기관의 장 등은 가석방 및 가중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2)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부착명령의 가해제 신청)”을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
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해제”를 “임시해제”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을 “(부착명령 임시
해제의 심사 및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가해제”를
각각 “임시해제”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가해제의 취소 등)”을 “(임시해제의 취소 등)”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가해제”를 각각 “임시해제”로 한
다.

제18조의3 전단 중 “가해제”를 “임시해제”로 한다.

제19조를 제19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9조) 제1항 중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로 하며,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과 적합성 여부 등의 조사(이하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가 선정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해당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죄명
4. 전체 형명형기
5. 최초 및 최종 형기 기산일
6. 최종 형기종료일
7. 경비처우 및 재범위험 등급

② 심사위원회는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

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는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 대상자의 범죄경력, 범죄내용(사실) 및 직업, 경제력, 생활환경 등 개별적 특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받으면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를 하거나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소재지 또는 해당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 대상자의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과 협의하여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를 위한 수형자의 면담 등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5장(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9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23조의2(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① 법원은 법 제31조

의2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참고자료를 보낼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수용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의3(보석허가 결정문의 송부 등) 법원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때에는 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송부하고 사후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의4(보석 피고인의 신고의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보석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하 “보석 피고인”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5(전자장치 부착 등) ① 보호관찰관은 보석 피고인에 대한 결정문 등본(제23조의3 후단에 따라 송부된 결정문을 포함한다.)을 확인한 후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에 보석 피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전자장치의 효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의무

가.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할 것

나.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릴 것

다.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

2.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

3. 「형사소송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법원이 정한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

4.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한 보석조건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전자장치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부착장치는 보석 피고인의 발목 또는 손목에 부착한다. 다만, 발목 또는 손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신체 부위에 부착할 수 있다.

2. 재택 감독장치는 보석 피고인이 제23조의4에 따라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날 보석 피고인의 주거지에 고정하여 설치한다. 다만, 보석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의6(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1조의

4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의 재판을 위하여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과 협의를 통해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상황을 송부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7(보석조건 위반 통지)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석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전자장치 부착을 거부하는 경우
3. 전자장치의 효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른 보석조건을 위반하거나 이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5.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를 변조하는 경우

6.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하고 사후에 인편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제23조의8(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통지) 법원은 법 제31조의4제3항,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석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하고, 사후에 그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의9(준용 규정)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4조의6,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부착자”는 “보석 피고인”으로 본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중 “가해제”를 “임시해제”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3장에 따른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무

②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의3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31조의4에 따른 보석조건 이행 상황 등 통지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8호, 제36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u> <u>시행령</u> 제1조(목적) 이 영은 「<u>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 「<u>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 3. (생략) 제16조(<u>부착명령의 가해제 신청</u>)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u>가해제</u> 신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u>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u> <u>시행령</u> 제1조(목적) ----- 「<u>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u>」----- ----- ----- ----- -----. 제2조(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 「<u>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u>」-----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u>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u>) ① ----- ----- <u>임시해제</u> ----- ----- ----- -----.

② 심사위원회는 피부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그 밖의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보호관찰관은 법 제18조제4항의 부착명령 가해제 결정이 있으면 결정서에 기재된 가해제 일에 전자장치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8조(가해제의 취소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해제의 취소신청은 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가해제

② -----
----- 임시해제-----

-----.

제17조(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 -----
----- 임시해제-----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임시해제 -----
----- 임시해제-----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① -----
----- 임시해제-----

-----.

② -----
----- 임시해제

취소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관은 부작명령의 가해제 취소결정이 있으면 피부작명령자에게 결정서를 제시한 후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가해제가 취소된 경우 부작명령 집행기간은 부작장치를 피부작명령자의 신체에 부착한 때부터 진행한다.

제18조의3(준용규정) 보호관찰대상자의 조사, 집행지휘, 주거이전 허가, 상담치료, 가해제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13조,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작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작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으로, “피부작명령 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로, “피부작명령자”는 “피보호관찰명령자”로, “피부작자”

--.

③ ----- 임시해제 -----

-----.

④ 임시해제-----

-----.

제18조의3(준용규정) -----

----- 임시해제 -----

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신 설>

제19조(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

사)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과 적합성 여부
등의 조사(이하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
령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 신
청 대상자가 선정되면 지체 없
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해당 교도소·구치소·
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
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죄명
4. 전체 형명형기
5. 최초 및 최종 형기 기산일
6. 최종 형기종료일
7. 경비처우 및 재범위험 등급

② 심사위원회는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는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 대상자의 범죄경력, 범죄내용(사실) 및 직업, 경제력, 생활환경 등 개별적 특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받으면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를 하거나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소재지 또는 해당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 대상자의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과 협의하여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제19조(결정의 고지 등) ①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결정서 등본을 수용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면서 법 제22조제1항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신설>

<신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교도소 · 구치소 · 소년교도소의 장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를 위한 수형자의 면담 등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결정의 고지 등) ① --

-----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23조의2(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① 법원은 법

<신 설>

<신 설>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참고자료를 보낼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수용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의3(보석허가 결정문의 송부 등) 법원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때에는 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송부하고 사후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의4(보석 피고인의 신고의

<신 설>

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보석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하 “보석 피고인”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5(전자장치 부착 등) ① 보호관찰관은 보석 피고인에 대한 결정문 등본(제23조의3 후단에 따라 송부된 결정문을 포함한다.)을 확인한 후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에 보석 피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전자장치의 효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의무

가.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할 것

나.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
호관찰관에게 알릴 것

다.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

2.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보석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을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는 것

3. 「형사소송법」 제102조제2항
제5호에 따라 법원이 정한 보
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

4.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한 보석
조건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전자장치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부착장치는 보석 피고인의
발목 또는 손목에 부착한다.
다만, 발목 또는 손목에 부착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
으면 다른 신체 부위에 부착
할 수 있다.

2. 재택 감독장치는 보석 피고

<신 설>

<신 설>

인이 제23조의4에 따라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날 보석 피고인의 주거지에 고정하여 설치한다. 다만, 보석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의6(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의 재판을 위하여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과 협의를 통해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상황을 송부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7(보석조건 위반 통지)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1

조의4제2항에 따라 보석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전자장치 부착을 거부하는 경우

3. 전자장치의 효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른 보석조건을 위반하거나 이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5.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를 변조하는 경우

6.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한

<신 설>

<신 설>

제5장 출소자 등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심사위원회, 검사, 보
호관찰소의 장, 보호관찰관, 경

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
화·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
법으로 먼저 통지하고 사후에
인편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제23조의8(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
취소 통지) 법원은 법 제31조의
4제3항,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석 피
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보호
관찰소의 장에게 전화·모사전
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
저 통지하고, 사후에 그 결정문
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의9(준용 규정) 이 장에 따
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하여
는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4
조의6,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이 경우 “피부착자”는 “보석
피고인”으로 본다.

제6장 출소자 등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① -----

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 사법경찰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수용기관의 장 또는 수용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4. (생략)
5.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가해제
및 취소에 관한 사무
6. (생략)

<신 설>

7. · 8. (생략)

<신 설>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designed to help children learn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cross the entire page.

1. ~ 4. (현행과 같음)
5. -----
----- 임시해
제 -----
6. (현행과 같음)

6의2. 법 제3장에 따른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에 관한 사무

7. · 8. (현행과 같음)

②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보호

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
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
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
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의3에 따른 전자장
치 부착의 집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31조의4에 따른 보석조
건 이행 상황 등 통지에 관한
사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치료처우과	
연 락 처	02-2110-3857